

안전인증 변경 신청서
(결과통지서 겸용)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안전인증번호				
변경 신청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어린이제품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수료	
인증 결과			
판정			
판정 사유 (합격 시에는 적지 않습니다)	항목	기준	결과
비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과통지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안전인증기관장

직인

처 리 절 차								
변경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	판정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	결과통지서 작성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	결과통지서 발급 신청인